

춘천지방법원 2016. 11. 3 선고 2016가단424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10. 6.

판결 선고 2016. 11. 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4. 5. 30.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임정택

별지